1. 침해사고시 통지의 내용 및 방법

- [참조 자료] 02. 침해사고관리지침 Ver 1.0 (6 페이지 제 7조 침해사고 보고 3항)
 - ③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용자(정보주체)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통지방법: 전화, 휴대전화, 전자우편, 서비스접속화면등 방법으로 제시함
 - 2. 발생내용
 - 3. 발생원인
 -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확산 방지 조치 현황
 - 5.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 방법
 - 6. 담당부서 및 연락처

2.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사후관리 대책

- [참조 자료] 02. 침해사고관리지침_Ver 1.0 (6 페이지 - 제 8조 침해사고 대응)

제8조(침해사고 대응)

- ① 정보보호 침해사고 접수 후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침해사고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.
- 1. 침해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침해당한 서버의 네트워크 분리, 공격 포트의 차단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다.
- 2. 침해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통계청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에 서비스를 중단하며,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일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 후 즉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중단시킨다.
- 3. 응급조치 후 정보보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해당 침해사고 관련 로그 및 제반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해야 한다.
- 4. 국가정보원 등에서 권고하는 유형별 대응 조치를 취하고,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② 정보보호 침해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. 악성코드 공격
- 2. 서비스거부 공격
- 3. 비인가접근 공격
- 4. 복합구성 공격

- [참조 자료] 02. 침해사고관리지침 Ver 1.0 (8,9 페이지 - 제 13조 사후관리)

제 13조(사후관리)

① 정보보호 관리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개정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, 유관기관 현조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필요 시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

8

한다.

- ② 정보보호 관리자는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여 동일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대응 및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보호 담당자는 1, 2 등급의 보안사고 관련된 기록을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고,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법적 또는 규정상 보안사고 관련하여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외협력 관련부서는 정보보호 관리자와 협의 후 대응하여야 한다.
- ⑤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들을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 공유 및 전파하여야 한다.